

농산물유통센터 위탁운영방식 개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정책제안



목 차

1.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농안법 등 관련법령 현황 및 개정 현황	1
2. 농안법 시행규칙 제 47조 제②항 및 별표 2에 대한 유형별 선정 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	13
3. 외국 판매협동조합 중 매장운영 사례 등 참고자료	19
4. 김성수의원의 정책 제안	37
4-1. 농산물유통센터 위탁운영 관련 법령 개정	
4-2. 마늘을 도매시장 상장경매 품목으로 전환	
4-3. 농협 유통자회사 SSM 사업조정제도 적용대상 제외	

동 자료는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의 도움을 받아
김성수 의원실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요약문

- 농협중앙회는 농안법에 의거, 지자체가 국고지원을 받아 시설확보 후 위탁운영하는 7개소의 유통센터가 있음.(고양, 성남, 수원, 달성, 목포, 김해, 울산)
- 최초 5~10년 단위로 계약 후 재계약은 3년 주기로 연장하고 있는데, 유통센터의 특성상 시설투자에 대한 명확한 부담 주체가 없어 유통센터 개설 이후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경쟁력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초래함.
- 농산물종합유통센터(농협 하나로클럽)의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최초 투자액과 인력의 유지비용을 고려하면 최초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적자를 이어가는 매장이 있어서, 기존의 대형 마켓과 경쟁에서 차별화된 판매 전략을 통한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

.....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농안법 등 관련법령
현황 및 개정 현황**
.....

1.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농안법 등 관련법령 현황 및 개정

1) 유통센터 관련 법령 현황

- 「농안법」 제69조1)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2로 규정.
 - 부지 20,000m² 이상, 건물 10,000m² 이상 규모로 필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편의시설은 지역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않을 수 있음.
 - 단, 부지 및 건물면적은 취급물량과 소비여건을 고려하여 기준 면적에서 50%까지 감하여 적용 할 수 있음.
-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농안법」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종합유통센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농안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부지 및 건물면적을 50%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
 - 입지적으로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필요하나 지역 여건상 규정에 의한 부지 및 시설 확보가 어려운 경우 또는 취급 규모가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감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부지 및 건물면적을 감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명문화된 기준은 없으며, 정부지원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판단.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농수산물의 수집능력,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상의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2).

1) 제30차 일부개정 2011.7.21. 법률 제10886호

2) [일부개정 2010.7.27 농림수산물부령 제132호]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재계약 시에는 3년 주기로 위탁기간을 연장 하고 있음.

<별표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안법시행규칙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p>	
<p>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p>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그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p> <p>⑤ 종합유통센터의 설치,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p>	<p>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p> <p>①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지역의 농수산물유통시설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운영자의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 3. 부지·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4.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건설의 타당성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부지구입·시설물설치·장비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3.3></p> <p>③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p> <p>① 법 제6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p>

	<p>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자료 한다. <개정 2008.3.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p>②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능력·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수산물유통에 대한 경험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p> <p>③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총액은 당해 종합유통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2)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 (별표 2)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제46조 제3항 관련)

구 분	기 준
부 지	20,000m ² 이상
건 물	10,000m ² 이상
시 설	1. 필수시설 가. 농수산물의 처리를 위한 집·배송시설 나. 포장·가공시설 다. 저온저장고 라. 사무실·전산실 마. 농산물품질관리실

	바. 거래처주재원실 및 출하주대기실 사. 오·폐수시설 아. 주차시설 2. 편의시설 가. 직판장 나. 수출지원실 다. 휴게실 라. 식당 마. 금융기관의 점포 바.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

1. 편의시설은 지역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지 및 건물면적은 취급물량과 소비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에서 50퍼센트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개선의견

- 부지 및 건물면적을 50%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등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농림부의 의견은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현재 기준 면적 감소 적용의 고려 기준이 되고 있는 취급물량과 소비여건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농산물 유통센터 설립 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향후 부지 및 건물면적을 감하여 적용하는 대상은 정부지원 사업으로 한정하거나, 명확한 판단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농산물종합유통센터(농협 하나로클럽)의 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유통센터 건립 시 투자한 금액과 고용한 인력의 유지비용을 고려하면 최초 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적자를 이어가는 매장이 있다고 함.
- 재계약의 3년 주기의 문제보다는 기존의 대형 마켓과 차별화 된 판매 전략을 통한 경영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농안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농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2. "농산물종합유통센터"라 함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u>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사업장을 말한다.</u></p>

*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11.7.26~8.16), 9월 현재 규제심사 진행 중.

2. 농안법 시행규칙 제 47조 제②항 및 별표 2에 대한 유형별 선정기준에 대한 적정성 여부

-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94.5월 농안법과동에 따라 마련된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의 주요과제로 추진되었으며,
 -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상 또는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가격안정에도모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 및 상거래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며,
 - 이를 위해 농수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농안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에 의한 별표 2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갖춰야 할 시설기준을 규정하였고, 동 규칙 제47조 제2항은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의 선정기준과 위탁기간 등을 규정한 것으로,
 -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부지와 관련시설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 편의시설은 지역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않을 수 있고, 부지 및 건물면적도 취급물량과 소비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음.
 - 또한,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운영주체는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수집·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수산물유통경험 등을 고려하여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안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산물종합유통센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 농안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농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하도록 개정 추진 중에 있음.

3

.....
외국 판매협동조합 중
매장운영 사례 등
.....
참고자료

3. 외국 판매협동조합 중 매장운영 사례 등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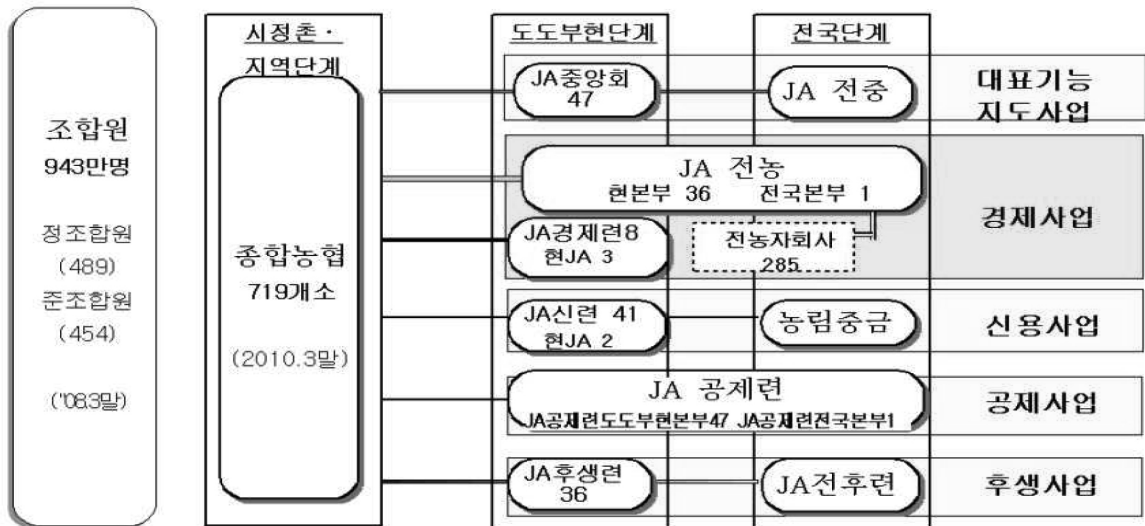
□ 일본, 미국 유럽 국가의 생산자단체(협동조합)의 역할

1) 일본 농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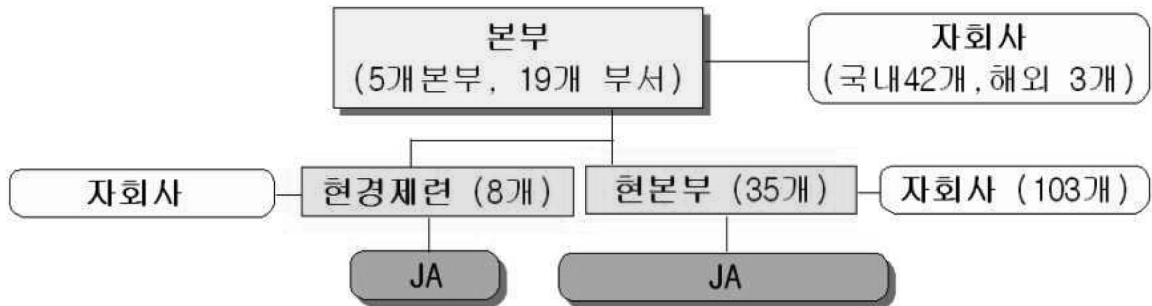
□ 일본농협의 구조적 특색

- 3단계조직(전국-도-시군) : 지도 및 신용사업, 경제사업 일부.
* 경제사업의 경우 2단계 조직으로 통합 중.
- 사업분리 : 지도(전중), 경제(전농), 신용(농림중금), 공제(공제련)

□ 일본 농협의 조직도



□ 일본 전농(경제사업)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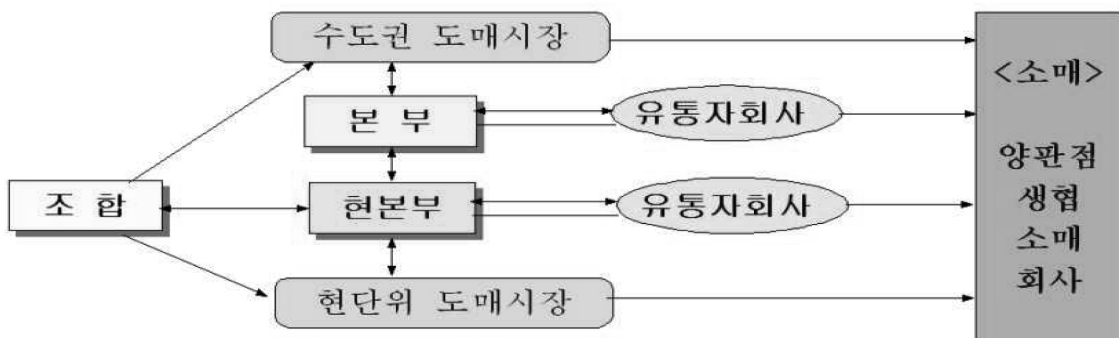


* 5개 사업본부 : 미국, 원예·농산, 축산, 생산자재, 생활관련 사업본부

□ 전농의 사업체계(역할)

<판매사업>

- 계통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판매, 인터넷판매, 대형유통업체 직거래가 늘어나면서 전농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
- 도매시장 출하 : 계통출하, 본부-현본부가 구매자들의 제안을 받아 조합에 전달한 후 조합의 동의 후 일괄계약 추진.
 - 조합은 자체사업이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통사업에 참여.
- 직거래사업 : 도매·가공부문 자회사를 통해 조합의 판로 개척.
 - 수도권 시장에서는 전농의 유통자회사가, 현 단위 시장에서는 현 본부의 유통자회사가 수행.



- 일본의 전국농협협동조합중앙회(JA)³⁾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형 유통센터를 운영하지는 않고, 농산물직매소(Famer's Market)⁴⁾를 통한 지산지소(地產地消)의 개념을 도입하여 판매사업을 하고 있음.⁵⁾
- 농산물직매소는 운영 주체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뉨.
 - 농협이 개설하고,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운영형의 농산물직매소(JA 농산물직매소)로서 농산물직매소 중 가장 많은 경우를 차지함.
 - 농협이 개설하고, 조합원이 운영하는 조합원·운영형 농산물직매소
 - 지자체가 개설하고, 농협이 운영하는 행정개설·농협 운영형 농산물직매소
 - 지자체가 개설하고, 농협의 조합원이 운영을 수탁하는 행정개설·농협조합원 운영형 농산물직매소
- JA의 농산물직매소는 주요 품목에 대하여 시장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농산물 출하자가 가격 설정 시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⁶⁾
- 2009년 기준으로 JA의 농산물직매소의 수는 16,816곳, 연간 총 판매액은 8,767억 엔이었음.
 - 그 중 JA의 농산물직매소의 수는 1,901곳, 판매금액은 2,811억 엔(32.1%)이었음.
- JA의 농산물직매소에서는 수입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음.
- 중·대규모의 JA에서는 각 지역의 기업과 연계하여 판매 사업을 벌이는 곳도 있음.⁷⁾
 - 사이타마현(埼玉縣)에 있는 농협의 경우는 농산물직매소의 농산물을 해당 지역의 기업식당에 판매하고 있음.

3) 우리나라의 농협중앙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국중앙회, 도도부현중앙회로 분류되어지고 있음.

4) 지산지소의 개념으로 지역 농민들이 재배한 농작물을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곳을 말함.

5) 전국농협협동조합중앙회, www.zenchu-ja.or.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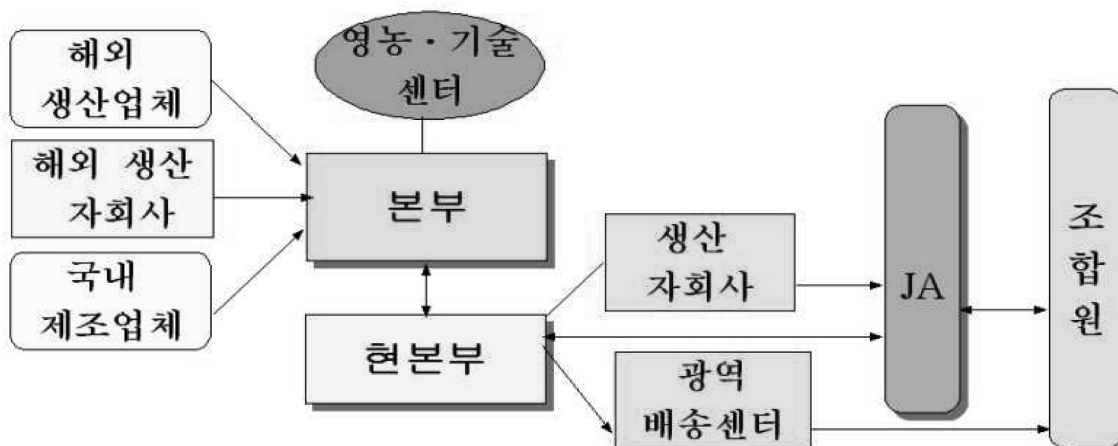
6) 농림수산성(일), 「산지직매소 조사결과의 개요」, 농림수산성, 2011.7.25

7) 농림수산성(일), 「농협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농림수산성, 2009.5.

-이와테현(岩手縣)에 있는 농협의 경우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농산물직매소의 운영부터 농산물직매소를 경유하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공급까지 다각적인 경영을 전개하고 있음.

<구매사업>

- 계통구매를 원칙 : 조합원-조합-현본부 계통의 구매 주문을 받아 본부가 생산업체에 대해 일괄계약을 체결.
 - 현단위에서는 광역배송센터를 설치하여 농가에 직접 배송함으로써 운송비, 관리비 등을 절감.
- 영농자재 가격안정을 위해 해외에서 원료를 구매하거나 해외 생산업체로부터 제품을 직접 구매.
 - 사료, 비료 부문에서는 해외에 원료 생산 자회사 및 관계회사를 설립하고, 수송 선박을 확보.
- 영농자재 제품개발 및 안전 사용을 위해 영농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일부 현단위에서는 특수자재 생산을 위한 생산 자회사를 운영.



2) 네덜란드 농협(지주회사 : Greenery)

□ 조직 구성

- 네덜란드 농협은 1877년 최초의 구매농협을 시작으로 농민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설립.
 - 농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중립적이며, 시장경쟁을 통해 성장.
- 농협—연합조직—NCR의 3단계 구조
- 각 부문별 농협(1차 농협)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연합조직(2차 농협)을 설립, 2차 농협이 다시 회원으로 가입하여 3차 농협을 설립.
 - 2차 농협 : 신용농협연합회, 구매농협연합회, 경매농협연합회 등
- NCR(3차 농협)
 - 1934년 "전국농업·원예협동조합위원회(National Cooperative Council for agriculture and horticulture, NCR)" 설립.
 - 비사업적 기능의 조직체로서 농협과 농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며, 연구, 교육,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
- 네덜란드 협동조합 조직도



□ 판매사업 체계(역할)

- 자회사 그리너리 BV가 판매사업을 전담
 - UA는 판매사업을 하지 않고 자회사의 주주로서 조합원의 의사를 결집하여 자회사의 경영을 지도 관리.
 - BV는 대형 소매유통업체를 고객으로 하는 청과물 도매유통회사로서 판매사업을 전담하며 계약중계, 경매방식 등으로 사업 수행.
- 인터넷 네트워크(Greendirect)를 통해 정보교류
 -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생산계획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상품과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정보망과 물류체계를 갖춘.
- 농산물의 선별은 규정에 따라 생산자가 직접 수행.
 - 등급, 품질, 크기, 안전성, 병충해, 최종 소비지까지 도착시간을 고려한 신선도 등을 생산자가 책임지고 관리.

<거래종류별 판매사업 방식>

- 계약중계에 의한 판매
 - 그리너리 판매담당자의 알선에 의해 생산자와 구매자가 대면거래를 통해 정보교환 후 출하물량과 품질·규격 등을 결정.
 - 가격산정단계에서는 생산자는 그리너리에게 가격 결정권을 위임.
 - 그리너리는 적정가격을 제시한 구매자와 대리계약하고 생산자인 조합원은 "The Greenery" 브랜드를 부착하여 출하.
- 경매에 의한 판매
 - 약 5%의 상품이 경매를 통해 판매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인터넷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5개의 경매장 운영).
 - 생산자가 부담하는 상장수수료는 대체로 매출액의 8% 수준.

3) 이탈리아 Coop. Agr. Salto Di Fondi

□ 연 혁

- 1977년 설립
- 1989년 EU 기금 보조
- 1990년 Lazio 주 기금 보조

□ 일반현황

- 조합원 : 7만 농가(개인 또는 단체)
 - 가입조건 : 자가 농지 소유 및 세금신고내역 증명
 - 평균 경작지 : 5,000m²
- '05 출하량 : 4,884톤 (토마토가 전체의 41% 차지)
- 조합 운영금 : 조합원 판매이익금의 10%를 조합으로 귀속


□ 출하 현황

- 조합 작업장 및 도매시장에서 세척, 선별, 포장, 출하물량 집계 등의 작업 수행.
 - 농산물 성출하기(5~7월 등)에는 약 20명, 이외의 시기에는 약 10명이 작업.
- 주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며 수출 또는 자체 직판장 판매도 일부 있음.
- 토마토 작업비(선별, 세척 등) : 0.5¢/kg
 - 토마토 이외의 품목은 별도의 작업 없이 재포장하여 출하.
- 하우스 포도 6~7월, 노지 포도 8~10월, 올리브 11월 중순~12월 초에 수확·출하.
- 자체 브랜드 소유(Salto Di Fondi)
 - 출하 및 판매 등 생산 이후의 과정을 조합에 일임하고 소속 농가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여 브랜드 가치 제고 도모.



4) 프랑스 CERAFEL(채소조합)

□ 브레타뉴 지역의 생산자 협회

- 1962년 생산자들의 자조적 모임으로 생산된 상품의 가격을 제대로 받기 위해 자생적으로 조직.
 - CERAFEL 소속의 자체 산지 경매장 3개 보유.
 - 산지 수집상과의 품질에 대한 신뢰로 물품 없이 생산량 데이터 자료만으로 3개의 산지 경매장에서 동시경매 실시.
 - 경매장 매참인은 50개 회사로 해당지역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유통질서 문란을 사전에 방지함.
 - CERAFEL 소속의 자체 산지시험장 5개 보유.
 - 품종개량, 토양관리, 생육관리 등을 통해 품질경쟁력 향상.
 - PRINCE DE BRETAGNE 자체 브랜드 소유.
 - 유럽공통 품질기준 적용 및 그보다 더 엄격한 자체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자체브랜드 상품에 활용 판매하고 있음.
- 
- 가격지지, 자체홍보사업 및 수출물류사업
 - 각 생산자의 경매대금의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생산량 과잉시 가격지지, 상품홍보 등에 활용.
 - 화물선 3척을 보유하고 있어서 타지역 수출물류사업을 운영함.
 - 자체 교육기관 ISSFEL 운영
 - 교육기관 운영을 통해 생산자 교육 및 영농후계자 양성.
 - 대형유통업체의 구매자 등의 마케팅 교육과정 운영.
 - 일정부분 정부보조와 자체 운영기금으로 운영됨.

4

김성수의원의
정책 제안

4. (김성수의원의 정책 제안)

4-1. 농산물유통센터 위탁운영 관련 법령 개정

현 황

- 농산물유통센터를 농안법에 의거 지자체가 국고지원을 받아 시설 확보 후 농협중앙회가 위탁 운영.
 - 총7개소 : 고양, 성남, 수원, 달성, 목포, 김해, 울산
- 유통센터 운영권 선정주기(농안법시행규칙, 지자체 조례)
 - 최초 5~10년 단위로 계약 후 재계약은 3년 주기로 연장.

문 제 점

- 운영권 선정주기가 짧아 중장기적인 사업계획(투자계획 등) 수립이 불가능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곤란.

정책추진방향

- 농산물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기간 확대 등 관련법령 개정 필요.
- 개정요청 사항 (농안법시행규칙 제47조 제②항)
 - 공공유형 유통센터 운영주체 선정기준 구체화.
 - 별도의 선정기준표에 의거 평가항목 및 배점 명확화.
 - 위탁운영기간을 현행 '5년 이상' 에서 '10년 이상'으로 장기화.
 - 재계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붙임) 농안법시행규칙 현행대비 개정요구(안)

농안법시행규칙 제47조 현행대비 개정요구(안)

현 행	개 정 (안)
<p>②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u>농수산물의 수집능력·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등을 기준으로 하여</u>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u>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u>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p>	<p>②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u>별표 2의2에 의거</u>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u>운영주체의 지속적인 적정투자 유도 등을 위하여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u>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재계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p>



4-2. 마늘을 도매시장 상장경매 품목으로 전환

현 황

- 마늘은 도매시장에서 비상장(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 재배 농업인 등이 도매시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어려움.
 - 2000.6월부터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 중도매인과 수의매매 됨.
- 상장거래도 가능하나 대부분 비상장 거래로 이루어짐.
 - 출하자가 상장 시 중도매인들이 시장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낙찰.
 - ※ 일부 중도매인, 산지수집상, 깎마늘가공업자가 마늘 유통을 주도.

문 제 점

- 대부분 정가 수의매매로 이루어져 도매시장의 주요 기능인 공정 가격 형성 불가, 거래 불투명, 농업인의 시장 교섭력 약화 등을 유발.
- 도매시장의 국산마늘 거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거래 가격이 국내 마늘거래 기준가격을 형성.
 - 가락시장 거래량('08년) 29천톤 중 경매거래 5천톤(전국 생산량의 1.3%)

정책추진방향

- 도매시장에서 마늘을 상장경매 품목으로 전환.
- 기대 효과
 - 공개 경쟁에 의한 경매로 공정가격 형성 및 거래 투명성 확보.
 - 재배농업인의 안정적 출하 가능.

4-3. 농협 유통자회사 SSM 사업조정제도 적용대상 제외

현 황

- '09. 8월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 지침' 발표.
- 농협관련 적용사항
 -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직영 유통사업장은 비영리법인(생산자단체)이 영위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조정대상에서 제외.
 - 상법상 주식회사인 유통자회사 3개소(농협유통, 부산경남유통, 충북유통)는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
 - 규모가 미달하는 대전유통은 제외(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

문 제 점

- 유통자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영리법인)에 속하나 농산물 유통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이윤추구가 주목적은 아님.
 - 유통자회사 사업장도 농협(비영리법인)직영 유통사업장과 똑같이 우리농산물 판매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 수행.
- 그럼에도 직영 유통사업장과 달리 'SSM 사업조정' 신청대상에 포함되어 우리농산물 전문매장 출점에 많은 애로가 있음.
 -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견제기능 약화로 농업인 실익 감소 우려.

정책추진방향

-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농안법(농수산물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설립한 농협 유통자회사를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 명문화.**
 - 우리 농산물 판매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우리 농산물 전문매장 확대를 위하여 농협 유통자회사를 사업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기법시행령’ 중소기업범위에 농협 유통자회사 포함.
 - 법개정이 어려울 경우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상 제외.
 - ※ 농안법 제70조는 생산자단체의 유통자회사 설립·운영 및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통자회사 운영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MEMO
